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 |
|----------|---|

제출년월일 : 95. 8.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사유

사회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갖고 연구노력하는 개인, 단체,법인등을 행·재정지원함으로서 보다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하고 나아가 도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위한 명예연구소의 운영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자격요건 및 대상분야(안 제2조)
- 지정절차 및 지원(안 제4조)
- 연구성과평가회 개최(안 제6조)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각분야에서 특별한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노력하는 개인, 단체, 법인등을 충청북도명예연구소(이하“명예연구소”라한다)로 지정,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거양토록하여 도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요건 및 대상분야) 명예연구소로 지정될수 있는 자격요건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중 연구노력과 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그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 및 학계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

1. 농업분야 : 농축산품종개발, 신품종묘목생산, 재배기술개선등
2. 공업분야 : 새로운 기계제작, 신제품생산등
3. 관광분야 :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향토음식개발등
4. 환경분야 : 폐기물재활용, 환경오염방지 신기술개발등

제3조 (심의기관) 명예연구소 지정 운영에 따른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도청조정위원회에서 한다.

1. 명예연구소지정 및 해제에 관한사항
2. 명예연구소에 대한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평가회 수상자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제4조 (지정) ①명예연구소 지정은 연2회(1월, 7월)로 하되, 시장, 군수,출장소장은 희망자를 파악하여 1개월전까지 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실에서는 관련 실·국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연구소를 지정하였을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판을 교부한다.

③명예연구소로 지정된 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5조 (행.재정지원 및 관리) 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총괄관리는 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다음각호의 행정지원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에서 주관하여 관리한다.

1. 명예연구소와 산·학·연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계
2. 우수명예연구소에 도시군출장소발주 각종시험사업 또는 용역 의뢰
3. 필요한 정보·자료제공
4. 해외연수기회 우선권 부여등

제6조 (연구성과평가회) ①지정된 명예연구소의 연구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말 연구성과평가회를 개최한다.

②평가결과 우수안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이 시상한다. 다만, 도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우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상을 할수있다.

1. 최우수 (1명) : 300만원
2. 우수 (2명) : 각 200만원
3. 장려(다수) : 각 50만원

제7조 (지정해제) 지정된 명예연구소가 다음각호의 사항에 해당할시는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또는 타시도 이주 시
2. 본인이 해제를 원할 시
3. 연구실적이 미흡할 시

제8조 (홍보) 도지사, 시장, 군수, 출장소장은 지정된 연구소의 연구분야 내용을 관내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